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74 발의연월일: 2022. 10. 11.

발 의 자: 박재호 · 이병훈 · 백혜련

정일영 · 유동수 · 최인호

김병기 · 신현영 · 김정호

소병철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 된다고보아 형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

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이체"를 "이체하거나 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체"를 "이체 또는 인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체된"을 "이체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이체 또는 송금"을 "이체, 송금 또는 인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6. 가해자의 재산상태
- 7. 가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억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	
(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	
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	
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	
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 <u>이체</u> 하도록	가 <u>이체하거나</u>
하는 행위	亚宁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	나
금을 송금· <u>이체</u> 하는 행위	<u>이체 또는 인출</u> -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	5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 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 7. (생략)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 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 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 <u>이체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u>
<u>서 인출된</u> .
6.•7. (현행과 같음)
세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시조치) ①
이체, 송금 또
 는 인출
· ②·③ (현행과 같음)
세11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전기
통신금융사기로 타인에게 손해
를 입힌 자(이하 "가해자"라 한
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② 제1항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 한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 만,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배상 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 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가해자의 재산상태

노력한 정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 제15조의2(벌칙) ① ------

7. 가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는 <u>1억원 이하</u> 의 벌금에 처한	<u>1천만원 이상</u>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